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1. 21.

사회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토보고서

### 1. 경과

의안 제658호로 2025년 11월 7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도로 신설·확장·재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 
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체계적 연계방안 반영을 명시하여,  
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확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본 조례 개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 
자전거도로 연계 방안의 반영을 촉구하고, 도로 파손·훼손 또는  
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개선 조치를 통해 도로의  
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11. 7.~2025.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·군계획,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, 택지·공업·관광단지 조성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 조성을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,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“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”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  - 법 제10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(자전거도로 포함)은 도로 관리청이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이 자전거 도로의 파손·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
  - 도시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전거도로 조성과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5조의2(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)제4항은 도로의 개설·확장·재정비 또는 주거·상업·공업·관광단지 및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, 자전거도로 설치 및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 시 포함하도록 규정함.
- 같은 조 제5항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, 훼손 또는 안전 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신속히 보수·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 등 개발사업 단계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전거도로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자전거도로의 파손·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보수·개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자전거이용시설”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8조(도시·군계획 등의 반영)**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

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

3.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·확장 및 재정비계획

**제10조(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)**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.

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 2

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조의2(도시·군계획 등의 반영)**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도로의 조성
2.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,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
3.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
4.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
연 번	관리 주체	노선명	구간	
			기점	종점
1	구	양평로21길(별말길)	롯데제과	양평사거리
2	시	여의서로	국회의사당 동문앞	국회의사당 남문앞
3	구	선유로43길(성원마을길)	롯데제과	선유고등학교
4	구	당산로41길(당산서길)	당산서중학교	당서초교
5	구	문래북로(북측)	영남교회	영서장로교회
6	구	문래북로(남측)	영서장로교회	영남교회
7	구	문래로(동아리길)	문래중학교	관악고교
8	시	여의동로(마포대교방면)	광장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건너편	여의동주민센터
9	시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여의나루역	원효대교 남단 교차로
10	시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여의동주민센터	여의교오거리(자매공원 앞)
11	시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여의도자이 101동앞	광장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앞
12	시	국회대로	여의2교북단	서강대교남단
13	시	여의서로(서울교방면)	마포대교 남단	한국전통의 숲, 세우빌딩
14	시	여의서로(마포대교방면)	한국전통의 숲, 세우빌딩	마포대교 남단
15	시	여의서로(마포대교방면)	국회의사당 동문 앞	국회헌정기념관 정문
16	시	여의서로(서울교방면)	국회헌정기념관앞 정문	국회의사당 동문앞
17	시	여의서로(마포대교방면)	서울교사거리	국회의사당 남문앞
18	시	여의서로(서울교방면)	국회의사당 남문앞	서울교사거리
19	시	의사당대로(동측)	여의교오거리	여의도공원앞교차로
20	시	의사당대로(서측)	여의도공원앞교차로	여의교오거리
21	시	의사당대로(동측)	국회의사당역3번출구	국회앞삼거리
22	시	의사당대로(서측)	국회앞삼거리	국회의사당역 4번출구
23	시	여의대로(서측)	마포대교 남단	서울교사거리
24	시	여의대로(동측)	서울교	국제금융로 교차지점(파크원)

25	시	여의대로(동측)	여의대로6길 교차지점(파크원)	마포대교 남단
26	구	여의동로3길	윤중중학교	대한국토정보공사앞
27	구	국제금융로8길(동측)	대한국토정보공사 앞	수정아파트앞
28	구	국제금융로7길(동측)	수정아파트앞	장미아파트앞
29	구	국제금융로7길(서측)	장미아파트앞	수정아파트앞
30	구	국제금융로8길(서측)	수정아파트앞	대한국토정보공사앞
31	구	여의나루로(동측)	윤중초교앞 교차로	여의나루역 삼거리
32	구	여의나루로(서측)	여의나루역 삼거리	여의도공작아파트 A동앞
33	구	여의나루로(서측)	한국거래소 교차로	윤중초교앞 교차로
34	구	국제금융로(서측)	IFC몰	여의성모병원앞 교차로
35	구	국회대로76길(서측)	여의도공원앞교차로	순복음교회앞 교차로
36	구	국회대로76길(동측)	순복음교회앞 교차로	여의도공원 앞
37	구	국제금융로(동측)	한국거래소 교차로	여의성모병원 앞 교차로
38	구	여의공원로(동측)	국민일보	여의도지구대
39	구	여의공원로(서측)	여의도지구대	국민일보
40	구	여의대로2길(서측)	전경련회관앞	광장아파트 삼거리
41	구	여의대로2길(동측)	광장아파트 삼거리	전경련회관앞
42	구	영등포로26길	진로아파트	진로아파트
43	구	선유서로(양평역길, 강나리길)	진주맨션아파트	신한전기
44	시	도림로(동측)	문래동사거리	근로자회관 교차로
45	시	도림로(서측)	근로자회관 교차로	문래동 사거리
46	시	도림로(서측)	문래동사거리	성락주유소앞교차로
47	시	도림로(동측)	성락주유소앞교차로	문래동사거리
48	시	버드나루로(동측)	영등포로터리	당산중학교 교차로
49	시	버드나루로(서측)	당산중학교 교차로	영등포로터리
50	시	양평로(북측)	양평동 사거리	양평교
51	시	양평로(남측)	양평교	양평동 사거리

52	시	선유로(동측)	양평동 사거리	양화대교 남단
53	시	선유로(서측)	양화대교 남단	양평동 사거리
54	시	가마산로(북측)	사려가시장앞교차로	거리공원오거리
55	시	가마산로(남측)	거리공원오거리	사려가시장앞교차로
56	구	선유로9길(남측)	대원아파트	근로자회관 교차로
57	구	선유로9길(북측)	근로자회관교차로	대원아파트
58	구	국회대로54길	영등포동7가 29-105	영등포동7가 29-28
59	구	양산로(북측)	구청역(5호선)사거리	양평보행육교
60	구	양산로(남측)	양평보행육교	구청역(5호선)사거리
61	구	양산로(남측)	구청역(5호선)사거리	영등포 전통시장 북문주차장
62	구	양산로(북측)	영등포 전통시장 북문주차장	구청역(5호선)사거리
63	구	도영로(남측)	신도림역입구교차로	영등포역(회전교차로)
64	구	도영로(북측)	영등포역(회전교차로)	신도림역입구교차로
65	구	영신로(서측)	당산중학교앞교차로	청과시장입구
66	구	영신로(동측)	청과시장입구	당산중학교앞교차로
67	구	선유동1,2로(서측)	당산소방파출소	수동물병원(영등포로)
68	구	선유동1,2로(동측)	수동물병원(영등포로)	당산소방파출소
69	구	문래로(남측)	문래중학교	문래로
70	구	문래로(북측)	문래로	문래중학교
71	구	선유서로 (서측)	양평역사거리	기계공구상가
72	구	선유서로(동측)	기계공구상가	양평역사거리
73	구	여의동로3길(동측)	윤중중학교	대한국토정보공사앞
74	구	국제금융로7길(동측)	장미아파트앞	여의도선착장 삼거리 앞
75	구	국제금융로7길(서측)	여의도선착장 삼거리 앞	장미아파트 앞
76	구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LG트윈타워앞(마포대교남단)	여의나루역
77	구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여의교오거리(자매공원앞)	여의도자이 101동앞
78	구	의사당대로(서측)	국회의사당역 4번출구(이룸센터앞)	여의도공원교차로

79	구	여의서로(마포대교방면)	국회현정기념관앞 정문	서강대교남단
80	구	여의서로(서울교방면)	서강대교남단	국회현정기념관앞 정문
81	구	양평로22길 양평로22사길	양평사거리	선유도공원
82	구	여의동로(마포대교방면)	여의성모병원 앞	시범아파트앞 교차로
83	구	여의동로(서울교방면)	원효대교 남단 교차로	시범아파트앞 교차로
84	구	국회대로	서강대교남단	여의2교북단
85	구	선유로44길, 당산로41길	선유중학교앞교차로	당산서중학교
86	구	선유서로	기계공구상가	진주아파트
87	구	문래북로	신동아아파트	LG홈쇼핑
88	구	문래북로	LG홈쇼핑	신동아아파트
89	구	영등포로2길	관악고교	문래보행육교
90	구	63로	여의성모병원	63빌딩앞 삼거리(시범아파트앞교차로)
91	구	63로	63빌딩앞 삼거리(시범아파트앞교차로)	여의성모병원
92	시	여의도공원 자전거도로	한국전통의 숲	자연생태의 숲
93	시	마포대교R	마포대교(상류교) 북단	마포대교(상류교) 남단
94	시	마포대교L	마포대교(상류교) 남단	마포대교(상류교) 북단
95	구	도림천(우안)	구로디지털단지역	신정교 하부
96	구	안양천(우안)	신정교	한강합수부